

-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및 한정면허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 사 보 고

의 안 번 호	784
------------	-----

2019년 8월 28일
교 통 위 원 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9년 7월 18일, 송도호 의원 외 9명 발의

나. 회부일자 : 2019년 7월 25일

다. 상정일자

- 제289회 서울특별시의회 제1차 교통위원회(2019년 8월 28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송도호 의원)

가. 제안이유

- 현재 서울시에서 운행 중인 시내버스, 마을버스 등에는 햇빛차단 필름이 부착되어 있으나 단열 및 햇빛차단 성능이 떨어져 냉난방 시 에너지 손실이 심하며, 특히 여름철의 경우 뜨거운 열기와 자외선이 창유리로 직접 투과되어 에너지 효율을 감소시키고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는 시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음.

- 열과 자외선을 차단하는 기능을 가진 “열차단 필름”은 이미 한국철도공사 KTX 열차 창유리에 설치되고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공공발주를 통해 구매 설치하고 있어 그 성능과 효과가 입증되어 보편화되고 있음. 이에 국가공인시험기관의 시험을 통과한 열과 자외선 차단 성능이 우수한 필름으로 여객자동차를 개선하는 경우 재정보조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에너지효율을 증대시키고 대중교통 이용시민의 건강권 보호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열차단 필름”의 정의를 신설 (안 제2조제11호)
- 재정보조를 받을 수 있는 대상에 “열차단 필름” 추가 (안 제3조제2항제7호)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참조

다. 입법예고

- 기 간 : 2019. 7. 30 ~ 2019. 8. 6
- 제출의견 : 의견없음

라. 관련부서 의견조회 결과

- 서울시장(도시교통실 버스정책과) : 원안가결
- 마을버스 업계의 민원 예상
 - 사업 우선순위 및 시급성과 관련하여 운수회사 의견수렴 필요
 - 마을버스 시설·장비 지원은 시와 조합의 사업비 50:50 매칭사업으로 비용 부담률에 대한 사전협의 필요
- 시내버스 업계 및 조합의 의견
 - 차량 출시시 자외선 차단 및 가시광선 투과율 70%로 출시되고 있음
 - 사업 우선순위 및 시급성과 관련하여 운수회사 및 조합 의견수렴 필요
 - 열차단 필름 부착시 자외선차단 및 에너지 절약 등 성과 있음
- 열차단 필름 부착 관련 예산
 - 시내버스 1대당 장착비용은 60만원으로 7,404대를 부착할시 4,442백만원이 소요됨. 마을버스 차량까지 부착시 총4,936백만원 소요

4.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 김동수)

가. 개요

- 동 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에 “열차단 필름”의 정의를 신설하는 한편 현행 서울시 재정지원 대상으로 열거되어 있는 택시호출시스템, 통합카드시스템, 전자식 운행기록장치 등에 “열차단 필름”도 추가 하고자 하는 것임

나. 검토의견

-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 제50조제2항¹⁾에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설·장비의 확충 또는 개선 등”²⁾에 대해서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현행 조례에서도 “서비스의 개선을 위한 시설 또는 장비의 확충·개선 사업”에 대해서는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조례 개정의 근거는 이미 마련되어 있다고 할 것임

또한, 열차단 필름은 차량 내부에 들어오는 열에너지 등을 감소시켜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재정지원) ② 시·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 또는 융자의 대상 및 방법과 보조금 또는 융자금의 상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 제1항 각 호

1. 자동차의 고급화나 터미널의 현대화 2. 수익성이 없는 노선의 운행 3. 공동시설이나 안전관리시설의 확충과 개선 4. 낡은 차량의 대체(代替) 5. 터미널의 이전이나 규모·구조·설비의 확충·개선
6.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설·장비의 확충 또는 개선 7.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설비의 설치 및 개선 8. 경제적·환경친화적 안전운전 및 관리를 지원하는 시설·장비의 확충과 개선 9. 그 밖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진흥하기 위한 것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운전편의 및 시민 편의를 증진시킬 수 있고, 자외선 차단 및 에너지 절약 등의 성과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동 조례 개정의 취지는 인정된다고 할 것임

- 이와 관련하여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8조에서는 자동차 앞면 창유리 및 운전석 좌우 옆면 창유리 등에 대해 가시광선 투과율 기준³⁾을 정해놓고 있음에 따라 동 기준에 맞게 차량이 출고되고 있다는 점도 고려가 필요할 것임
- 한편, 동 조례안에 대한 서울시의회 예산정책담당관의 비용추계에 따르면 준공영제로 시행되고 있는 서울시내버스에 대해서 100% 예산을 지원을 할 경우 매년 약 8억8천만원, 마을버스에 대해서 50% 예산을 지원할 경우 매년 약 9천8천만원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한 바⁴⁾

실제 동 제도 시행시에는 열차단 필름 설치에 따른 비용-편익효과, 예산절감 방안 및 버스사고 발생시 열차단 필름 설치에 따른 안전성 문제 등에 대해서도 종합적인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임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없음

3) 앞면 창유리: 70퍼센트 미만, 운전석 좌우 옆면 창유리: 40퍼센트 미만

4) 시내버스 총 7,405대, 마을버스 1,646대 기준이며, 필름의 수명을 5년, 마을버스와 시내버스 시공비는 동일한 것으로 가정함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및 한정면허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및 한정면허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열차단 필름”이란 열과 자외선을 차단하여 에너지효율 개선에 기여하는 창유리 부착용 제품을 말한다.

제3조제2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택시호출시스템, 첨단교통정보시스템, 지하철·버스·택시 등 교통수단 상호간의 연계를 위한 통합카드시스템, 운임·요금결제시스템, 영상기록시스템 및 전자식 운행기록장치, 열차단 필름 등 서비스의 개선을 위한 시설 또는 장비의 확충·개선사업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 10. (생략)</p> <p><u><신 설></u></p> <p>제3조(재정지원 대상)</p> <p>① (생략)</p> <p>② 재정정보조를 받을 수 있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 4. (생략)</p> <p>5. 택시호출시스템, 첨단교통정보시스템, 지하철·버스·택시 등 교통수단 상호간의 연계를 위한 통합카드시스템, 운임·요금결제시스템, 영상기록시스템 및 <u>전자식 운행기록장치</u> 등 서비스의 개선을 위한 시설 또는 장비의 확충·개선사업</p> <p>6. (생략)</p>	<p>제2조(정의) ----- ----- -----.</p> <p>1. ~ 10. (현행과 같음)</p> <p>11. <u>“열차단 필름”이란 열과 자외선을 차단하여 에너지효율 개선에 기여하는 창유리 부착용 제품을 말한다.</u></p> <p>제3조(재정지원 대상)</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 ----- -----.</p> <p>1. ~ 4. (현행과 같음)</p> <p>5. ----- ----- ----- ----- ----- <u>전자식 운행기록장치, 열차단 필름</u> ----- ----- -----</p> <p>6. (현행과 같음)</p>